

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의 정비와 2001년 증평출장소 민간위탁 추진 시설인 문화회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관련 조문을 개정 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증평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4조)
- 위·수탁기간 명시 및 수탁운영자의 의무를 정함(제4조의2, 제4조의3)
- 수탁운영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을 신설함(제4조의4)
- 직제개편으로 증평문화회관의 관장을
“기획실장”에서 ⇒ “총무과장”으로 변경함(제5조)

□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□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탁관리등) ①출장소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등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4조의2(위·수탁기간) ①위·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 할 수 있다.

②수탁자가 재협약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가 위탁운영실적 등을 제출한 때에는 출장소장은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 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관리하는 재산은 문화회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
②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회관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③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회관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

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4조의4(지도감독) ①출장소장은 문화회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,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되,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하는 경우
3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

제5조제1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관리) 회관의 운영은 출장소 직영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위탁관리등) ①출장소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의2(위·수탁기간) ①위·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 할 수 있다.</p> <p>②수탁자가 재협약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3월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수탁자가 위탁운영실적 등을 제출한 때에는 출장소장은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 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 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의3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관리하는 재산은 문화회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5조(관리부서) ①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기획실장이 업무를 겸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②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회관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회관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·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의4(지도감독) ①출장소장은 문화회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,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되,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3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<p>제5조(관리부서) ①----- -----총무과장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발췌

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25조(국고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국유재산법

제21조의2(국유재산관리의 위탁) ①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해당 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,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 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국유재산법시행령

제21조(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)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2(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의 기간) ①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이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.

제21조의3(수탁재산의 관리) ①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, 수탁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

제62조(준용)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